

## 제14장 전자상거래

### 제14.1조 일반규정

1.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가 제공하는 경제적 성장 및 기회, 그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장벽 회피의 중요성,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적용 가능성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특히 이 장에 따른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협력함으로써 당사국들 간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14.2조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들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제11장(금융서비스)의 관련 규정에 포함된 의무의 대상이고 이 의무는 해당 의무에 적용 가능한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예외 또는 비합치 조치를 조건으로 함을 확인한다.

### 제14.3조 디지털제품

1.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sup>1</sup>을 부과할 수 없다.
  - 가. 원산지상품인 경우,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sup>2</sup> 또는
  - 나.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제품
2. 어떠한 당사국도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일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다음의 경우 부여할 수 없다.
  - 가. 다음을 근거로 하는 경우
    - 1) 불리한 대우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경우, 또는
    - 2) 그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작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인 경우, 또는

<sup>1</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내국세 또는 그 밖의 국내 부과금이 이 협정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부과되는 한, 당사국이 디지털제품에 대하여 그 조세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sup>2</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은 부속서 14-가에 정의된다.

나. 자국 영역에서 창작, 제작, 발행, 저장, 전송, 계약, 발주 또는 상업적 조건으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된 다른 동종의 디지털제품을 달리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sup>3</sup>

3. 제2항은 제9.13조(비합치조치), 제10.6조(비합치조치) 또는 제11.9조(비합치조치)에 따라 규정된 비합치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14.4조 온라인 소비자 보호**

1. 당사국들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할 때에 사기적이고 기만적인 상업적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들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 **제14.5조 개인 정보 보호**

1.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의 사용자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규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혜택을 인정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6조 종이 없는 무역**

1. 각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가 대중에게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각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형식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 **제14.7조 협력**

1.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특히 다음을 다룰 협력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가. 개인정보의 보호

나. 요청하지 아니한 상업용 전자 서신의 취급

---

<sup>3</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비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인에게 어떠한 권리도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 전자상거래의 보안

라.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소비자의 보호, 그리고

마.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관련된 상호 관심 있는 그 밖의 사안

2.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면서 겪는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전자상거래의 전지구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당사국들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및 다자 포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그러한 포럼의 틀 내에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제14.8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그 다른 장이 우선한다.

#### 제14.9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디지털제품**이란 전달매체에 고정되는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된 컴퓨터 프로그램, 문자열, 동영상, 이미지, 녹음물 및 그 밖의 제품을 말한다.<sup>4</sup>

**전자적 전송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된**이란 전자기적 또는 광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디지털제품의 이송을 말한다.

**개인정보**란 식별된 또는 식별 가능한 자연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무역행정문서**란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당사국이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양식을 말한다.

---

<sup>4</sup>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디지털화된 형태의 금융상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14-가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이란 다음 소호에 분류된 물품을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8523.21호, 제8523.29호, 제8523.41호, 제8523.49호, 제8523.51호, 제8523.59호 또는 제8523.80호